



TM

산림인증

KFCC/00-001

KFCC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규칙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44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문 서 명 : KFCC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규칙

문서번호 : KFCC-R-04

승 인 :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승 인 일 : 2025. 05. 21.

시 행 일 : 2025. 05. 21.

검 토 일 : 2030. 04. 20.

연 락 처 : kfcc@kofpi.or.kr

목 차

1. 총칙	4
2. 업무 처리 절차	5
- 제1호 서식 인증마크 라이선스 사용 신청서	10
- 제2호 서식 인증마크 라이선스 사용 계약서	12
- 제3호 서식 인증마크의 일회성(비제품용) 사용 신청서	15

KFCC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규칙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7. 12. 22.

개 정 2025. 05. 21.

1. 총칙

1.1 목적

이 규칙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KFCC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의 발행업무의 세부 수행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진흥원이 KFCC 인증마크(KFCC(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한국산림인증제도) 로고와 라벨) 사용 라이선스의 승인을 신청한 조직에 대한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까지에 대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책임과 권한

1.3.1 인증마크 라이선스 관련한 한국산림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인증마크 라이선스 사용 신청에 대한 결정

1.3.2 사무국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인증마크 라이선스 사용신청서 접수 및 검토

b) 위원회의 결정사항 신청기관에 통보

1.3.3 1.3.1의 책임과 권한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업무처리 절차

2.1 일반사항 등

2.1.1 이 규칙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인정된 인증서(Accredited certificate)는 인정기관의 심볼 또는 마크를 포함하고 인정된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된 인증서를 말한다.
- b) 한국산림인증위원회 공인 인증서(KFCC recognized certificate)는 다음을 의미한다.
 -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산림인증위원회(KFCC)로부터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경영인증 및 CoC인증 인증서
 - PEFC Council에서 승인된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KFCC)로부터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CoC 인증서
 - PEFC Council에서 승인된 국가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경영 또는 CoC 인증서

2.1.2 인증마크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법인체이어야 한다.
- b) 한국산림인증위원회가 규정한 대로 위원회에서 조직의 식별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2.1.3 인증마크 사용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사용자 그룹 A: KFCC 운영기관(한국산림인증위원회) 및 KFCC 공인기관

사용자 그룹 B: KFCC 산림경영인증 취득 조직

- a) 유효한 KFCC 공인 산림경영 인증서 보유
- b) 한국산림인증위원회와 KFCC 인증마크 사용 계약 체결

사용자 그룹 C: KFCC(PEFC) CoC인증 취득 조직

- a) 유효한 KFCC 공인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 보유
- b) 한국산림인증위원회와 KFCC 인증마크 사용 계약 체결

공동 소유, 경영 또는 기타 조직적 링크를 통해 사업장이 연결된 프랜차이즈 또는 회사와 함께 운영되는 복수 사업장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 소유자는 복수사업장 인증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KFCC 인증마크 사용 복수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 a) 본사 및 사업장이 하나의 법인 소속
- b) 본사 및 사업장이 단일 경영 및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인 소속

복수 사업장 인증 중 단체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의 독립 법인은 개별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 그룹 D: 기타 사용자(소매업체 제외)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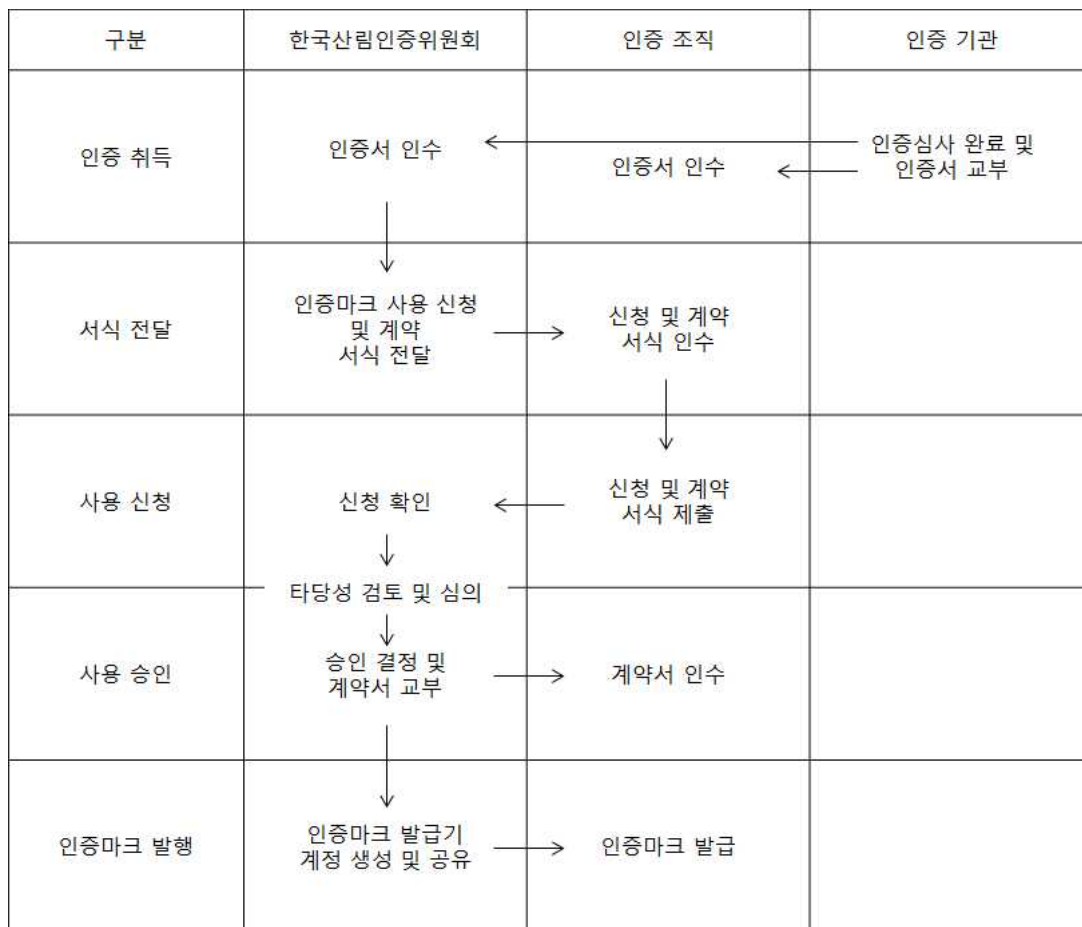
- a) KFCC 인증마크 사용자 그룹 A, B, C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조직 및 기타 조직(organisation)이어야 한다.
- b) 무역 및 산업 협회, 연구 및 교육 기관, 인증기관, 인정기관, 정부 조직(organisation), NGO 등과 같은 조직(organisation)이 어야 한다. 그룹 D는 또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최종 사용자이거나, 또는 공급업체가 생산품에 부착한 인증비율표시(claim) 및/또는 라벨이 부착된 생산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가 적용되지 않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 공급망 내의 조직(organisation)을 대상으로 한다.
- c) 한국산림인증위원회와 KFCC 인증마크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 그룹 D: 기타 사용자(소매업자 및 브랜드 오너)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KFCC 로고 사용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는 한국산림인증위원회의 목적과 명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b) 한국산림인증위원회와 KFCC 인증마크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 인증마크 라이선스 발행절차

2.2.1 인증마크 라이선스 발행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인증마크 라이선스 발행 프로세스

2.2.2 인증마크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2.3 사무국장은 신청서와 제출받은 서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만약,

제출한 내용과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2.2.4 사무국장은 제출서류,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 조건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심의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2.5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의 라이선스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2.6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위원장이 신청자의 라이선스 승인을 기각한 경우, 사무국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2.7 사무국장은 신청자의 라이선스 승인이 결정된 경우, 승인된 기관과 제2호 서식에 따른 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2.2.8 사무국장은 협약 후 모든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2.9 라이선스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이 보장된다.

a) 사용자 그룹 B: 유효한 산림경영 인증서

b) 사용자 그룹 C: 유효한 CoC 인증서

c) 사용자 그룹 D: 유효한 계약

2.2.1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개별 라이선스 없이 홍보 목적으로 하는 인증마크를 제품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일회성 사용(예, 신문, 보고서, 출판물, 기타 등)을 승인할 수 있다.

a)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b) 인증마크는 등록번호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c) “인증마크의 재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라벨 생성

2.3.1 이 규칙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진흥원이 인증마크 라이선스의

승인을 허가한 조직에 대해 적용한다.

2.3.2 라벨 생성기는 온라인으로 인증 취득 및 라이선스 계약 기업(조직)이 쉽고 빠르게 인증마크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2.3.3 라이선스 계약 기업(조직)은 KFCC-S-04(인증마크 사용 표준)를 준용하여 원하는 라벨을 라벨 생성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a) 언어: 한글과 영어 중 선택가능
- b) 색상: 녹색, 검은색, 흰색 중 선택 가능
- c) 외관: 테두리의 유무 선택 가능
- d) 기타: 로고 표시, 홈페이지 주소 등 추가 선택 가능

2.4 관련 서식

- a) 제1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신청서
- b) 제2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계약서
- c) 제3호 서식 인증마크의 비제품용(일회성) 사용 신청서

[제1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신청서

I. 신청자(기관) 일반정보

신청자(조직)명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웹주소	

※ 복수사업장을 포함하는 복수 라이선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는 모든 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 신청기관의 인증마크 사용자 그룹

※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의 카테고리만 표시가 가능하다.

B. 산림 소유자/관리자	☐ FM 인증
C. 산림 관련 산업체	☐ CoC 인증 ☐ 복수사업장의 CoC 인증
D. 기타 사용자	☐ 기타 사용자 ☐ 소매업체 및 브랜드 오너

III. 신청 프로세스를 위한 정보 및 문서

인증번호 및 유효기간(만약, 그룹 B나 C인 경우)	
단체 또는 복수사업장 명	
전년도 매출액(원)(만약, 그룹 B나 C인 경우)	
신청 프로세스를 위해 요구되는 문서: ☐ 인증서 사본 ☐ 단체/복수사업장 인증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만약, 그룹 B나 C인 경우, 단체/복수사업장 인증) ☐ 모든 계약의 세부내용을 포함하며 신청서에 포함되는 모든 현장의 목록 (복수사업장을 위한 신청의 경우, 그룹 C에 해당)	

IV. 자기 선언

본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한 규칙 및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다.
-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완전하며 진실임을 확인한다.

신청조직 대표

서명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 계약서

인증마크 사용 신청자(조직)명 :

본인(기관)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및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규칙 등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을 위해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산림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기관)은 인증마크 사용 라이선스 발행규칙에서 규정한 인증마크 사용자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 위원회는 등록상표인 인증마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진다.
- 인증마크 신청자인 본인(기관)은 위원회로부터 등록번호와 함께 인증마크 라이선스를 부여 받으며 인증마크 사용표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할 것이다.

제1조(정의)

1. 인증마크 사용 표준

-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과 인증마크 사용표준에 규정된 로고사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인증마크 저작권)

1. KFCC 인증마크는 한국산림인증제도 소유로 등록된 상표이며, “KFCC”약어 또한 등록되었으며 한국산림인증제도 저작권에 포함된다.
2. 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권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가 따를 것이다. 인증마크의 사용은 한국산림인증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된다.

제3조(인증마크 사용자의 책임)

1. 인증마크 사용자는 위원회가 발행한 등록번호와 인증마크 사용표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기초로 로고 사용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2. 사용자 그룹 B와 C의 경우, 인증마크 사용자의 식별 정보와 인증서 상태와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인증마크 사용자는 위원회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책임)

1.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 계약이 체결된 후 2주 이내에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인증마크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규정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벌금)

1. 위원회는 사용자 그룹 B와 C가 의도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인증마크를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용 또는 비제품용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불이행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2.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자가 계약을 위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알린 후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계약 종료)

1. 계약 당사자가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자가 계약 위반의 혐의가 있거나 인증마크 사용 표준을 위반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혐의가 의심스러운 경우,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계약중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시적인 중지 기간을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자가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일시적인 계약 중지를 종료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만약 인증마크 사용자가 서약서상의 내용과 인증마크 사용표준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즉각 종료할 수 있다.
4. 그룹 B의 인증마크 사용자의 경우, 산림경영 인증서가 그리고 그룹 C의 인증마크

사용자의 경우, CoC 인증서가 취소, 중지 또는 유효성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 협약도 인증 유효성이 변경된 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취소, 중지 또는 종료된다.

5.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의해 야기되는 일시적인 중지 또는 계약 종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

제7조(보고 및 제출)

1. 위원회는 인증마크 사용자에게 의해 제공받는 인증상태와 관련한 인증마크 사용자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사용자 그룹 B와 C의 경우, 인증마크 사용자는 제품용 사용에 대하여 제품 별로 구분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정보를 심사 이후에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증마크 사용자는 위원회에 비제품용 인증마크 사용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일회성 사용자는 인증마크의 비제품용(일회성) 인증마크 사용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유효성)

1.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체결된다.

제9조(계약의 기타 용어)

1. 위원회는 만약 인증마크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약 제3자로부터 불만을 제기 받은 경우, 인증마크 사용자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인증마크 사용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0조(중재)

1. 이 계약은 국내의 법에 적용된다.

YYYY. MM. DD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0 0 0

인증마크 라이선스 사용 신청자(기관) 주소
[대표자 이름 및 서명]

[제3호 서식]

인증마크의 비제품용(일회성) 사용 신청서

I. 신청자(기관) 일반정보

신청자(조직)명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웹주소	

II. 인증마크 사용의 목적

인증마크 사용 목적

신청조직 대표
서명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